

한국언론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활동 기간: 2025. 10. ~ 2026. 10.

제52대 한국언론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선

위원 민영, 박소영, 박찬경, 상윤모, 정은령, 최지향

목 차

I. 위원회 개요

1. 설치 배경 및 목적
2. 위원회 구성
3. 활동 경과

II.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제정

1. 운영규정 주요 내용
2. 운영세칙 주요 내용

III. 사회책임 활동

1. 공영방송 이사 후보 추천
2. 사회 현안 대응 및 사회 책임 공론화

IV. 향후 논의를 위한 핵심 쟁점과 과제

1. 핵심 쟁점
2. 향후 과제

V. 맺음말

VI. 부록

부록 1. 「사회책임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부록 2. 「사회책임 특별위원회 운영세칙」

I. 위원회 개요

1. 설치 배경 및 목적

한국언론학회는 정관과 윤리강령을 통해 연구, 교육, 조사와 함께 사회참여를 포괄하는 공적 성격을 표방해 왔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할 것을 학문공동체의 실천 원리로 삼아 왔다. 그러나 학회의 사회참여는 대체로 특정 사건 발생 이후 임시적 연대에 의존하는 사건 대응형 구조에 머물러 왔고, 이에 따라 대표성, 절차적 정당성, 책임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해 왔다.

한국언론학회 제52대 집행부는 학회의 사회적 실천을 위한 명확한 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2025년 10월 사회책임 특별위원회를 발족하였다. 특히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회의 추천권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의 정비는 더욱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사회책임 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사회적 의제에 대응해 학회의 입장을 형성하고, 나아가 학회의 추천권 행사와 관련된 심의 및 의결 등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기획되었다.

이 보고서는 사회책임 특별위원회의 출범 이후 주요 활동, 즉 ①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및 정비, ② 공영방송 이사 후보 추천 업무, 그리고 ③ 기타 사회책임 활동 성과 및 향후 과제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위원회 구성

한국언론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역과 성별을 고려한 위원 구성을 통해 학회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운영규정상 위원회는 2인의 당연직 위원(학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및 총무이사)과 5인

의 추천직 위원(학회장 추천)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1년(1회 연임 가능)으로 한다.

구분	내용
위원장	이승선
위원	민영, 박소영, 박찬경, 상윤모, 정은령, 최지향
구성 원칙	당연직 2인 + 추천직 5인(총 7인), 지역 및 성별 안배
임기	1년(1회 연임 가능),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간사	총무이사 겸임

3. 활동 경과

본 위원회는 2025년 10월 14일 킥오프(1차)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학회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했으며, 2026년 5월 9일 언론학회 이사회에서 운영규정이 승인됐다.

시기	주요 활동
25.10.14	킥오프(1차) 회의 위원회 설치 배경, 구성, 주요 업무 및 타 학회 사례 검토
25.11 ~ 26.03	총 5차례의 정기회의를 통해 운영지침(안) 검토, 수정, 보완을 거쳐 3월 정기회의에서 집행위원회에 상정할 최종안 확정
25.11.27	위원회 발의로 언론학회 현안 토론회 개최: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
26.04.10	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운영지침(안)이 운영규정으로 전환
26.05.05	5월 정기회의를 통해 최종 운영규정(안) 확정

시기	주요 활동
26.05.08	봄철 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학회의 사회적 책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개최(박소영 책무위원 발표)
26.05.09	이사회 승인: 「사회책무 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의결
26.06.01	한국방송학회 공적 참여 특별위원회 공청회 참여
26.06.04	위원회 의결: 「사회책무 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6.06	공영방송(방송문화진흥회, EBS, KBS) 이사 후보 추천 업무 관장 - 3학회 통합추천위원 선정 및 언론학회 추천 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제반 업무(세부 일정은 Ⅲ-1 참조)

II. 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제정

사회책무 특별위원회 활동의 핵심 성과는 「사회책무 특별위원회 운영규정」과 「사회책무 특별위원회 운영세칙」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학회의 사회참여를 제도화된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에 기반한 공적 행위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장치이다. 이를 통해 사건 대응형 개입 구조에서 나타난 절차적 정당성 부족과 집행부 중심 의사결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학회의 사회책무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구축하고자 했다.

1. 운영규정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부록 1 참조)

조항	핵심 내용
목적(제1조)	정관과 윤리강령이 정한 사회적 책무 이행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사항 규정

조항	핵심 내용
구성(제2조)	당연직 2인 + 추천직 5인(총 7인), 위원장 호선, 임기 1년(1회 연임), 간사는 총무이사, 총회 승인을 통한 구성
직무(제3조)	사회책임 관련 학술활동, 학회장/위원회/연구회/회원 의뢰 사항, 국 가/공공기관 등의 위원 추천 등 공식 의뢰 사항, 회원 의견 수렴 등을 심의 및 의결
회의(제4조)	월 1회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 결, 회의록 작성·확정, 공개 원칙(2/3 찬성 시 비공개), 결정 사항 회원 공개
기피·제척·회피 (제5조)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기피, 제척, 회피 절차 및 자격 정지 규정
추천권 행사(제6조)	공모 기간 및 자격 공지, 학회 간 협의 참여 위원 선발, 신청 자격 요 건(정회원 3년 이상, 전문성, 방송법 결격사유 미해당, 중복신청 금 지), 이사회 보고·승인, 추천 철회 규정
의견표명 등(제7조)	학회장, 집행위, 학회 명의의 다층적 의견표명, 학술활동 전개, 중장 기 과제 지정, 기각·판단보류 등 결정 유형화 및 회원 동의 절차 제시
보고서(제8조)	활동 내용, 사회책임 이행 평가, 중장기 과제 평가 및 제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행세칙(제9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칙으로 위임

2) 핵심 취지

- **의사결정 구조의 공식화:** 비공식 논의나 집행부 중심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합의
기반의 공식 심의, 의결 체계를 명문화함
- **의견표명 절차의 단계화 및 주체 확장:** 학회 명의의 공식 입장 표명에 회원 동의
절차를 요구하는 한편, 표명 주체를 학회장, 집행부에서 학회 전체로 확장하여
다층적 표명을 가능하게 함. 기존의 자발적 연서명 방식도 포괄함

- **추천권 행사의 제도화:** 공적 기관에 대한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모집 절차, 자격 요건, 평가 기준,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규정했으며, 기피, 제척, 회피 규정을 명시하여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함
- **투명성 확보:** 사회책무 특별위원회 회의록 작성, 결정 사항의 공개 원칙, 활동 종료 후 보고서 제출 등을 명시하여 학회 사회참여 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함

2. 운영세칙 주요 내용(부록 2 참조)

이사회 승인으로 운영규정이 확정된 후, 위원회는 실제 추천권 행사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정하기 위해 2026년 6월 4일 「운영세칙」을 제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목	핵심 내용
추천 대상의 확보	응모 인원이 추천 대상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할 경우 학회장, 자문위원회, 전문가 등에게 심사 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허위 자료 제재	제출 자료가 허위인 경우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고 향후 5년간 관련 된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며, 추천 절차 진행 중 확인되면 추천을 취소하도록 규정
심사 기준	①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비전, ② 전문성, ③ 독립성 및 공정성, ④ 도덕성, ⑤ 학회 활동 기여도의 다섯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공영방송 외 기관 추천 심사도 이에 준하도록 규정함
선정 방식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이 총점의 60% 이상인 대상자 중 상위자 순으로 정하되, 심사위원 2인 이상이 40% 미만을 준 경우 제외함
이해충돌 관리	친족관계, 직접적 업무 관계, 금전적, 직무상 이해관계 등을 제척, 회피, 기피 사유로 명시함

Ⅲ. 사회책무 활동

사회책무 특별위원회는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을 토대로 크게 공적 추천과 학술활동이라는 방식으로 학회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였다.

1. 공영방송 이사 후보 추천

사회책무 특별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위해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한국언론학회를 대표하는 이사 후보 추천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는 위원회의 제도적 정비가 실질적인 공적 임무 수행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이다.

1) 추진 체계

한국언론학회는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함께 방송미디어 3학회로 선정되어, 3학회 협의를 통해 통합추천위원회(학회별 5인 추천, 총 15인)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원회는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통합추천위원회에 파견할 위원과 각 방송사 이사 후보자를 공모로 선발하는 절차를 주관하였다.

2) 주요 일정

날짜	주요 활동 및 결과
26.05.29	방송미디어 3학회 선정(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26.06.01	3학회 협의로 통합추천위원회 구성 합의(학회별 5인, 총 15인)
26.06.05	언론학회원 대상 통합추천위원회 위원 공모(~6.12), 방문진, EBS, KBS 이사 후보 공모(~6.15)
26.06.13	사회책무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통합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심사 진행(온라인): 총 5인 선정

날짜	주요 활동 및 결과
26.06.16	사회책무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언론학회 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심사 진행(오프라인): 방문진 2명, EBS 2명, KBS 2명 후보 선정
26.06.18	3학회 협의로 통합추천위원회 운영 규정 합의
26.06.23	언론학회 추천 이사 후보 이사회 보고 및 승인
26.06.24	3학회 통합추천위원회 개최: 3학회 추천 최종 후보 선정
26.06.25	학회원 대상 결과 공지
26.06.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최종 이사 후보 보고

3) 심사 절차 및 결과

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에 따라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비전, 전문성, 독립성 및 공정성, 도덕성, 학회 활동 기여도 등의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의 명단은 공개하되, 심사 대상자별 개별 심사 결과 등은 법령상 공개 의무나 법원 명령 등을 제외하고는 그 비밀을 보장하였다. 이는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피심사자 보호를 함께 도모하기 위한 조치였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한국언론학회 추천 이사 후보는 다음과 같다.

추천 대상 기관	선정 후보(회원)
방송문화진흥회(MBC)	김경희, 유홍식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황용석, 이승조
한국방송공사(KBS)	최영재, 이완수

2. 사회 현안 대응 및 사회 책무 공론화

- **현안 토론회 개최 발의 및 실행:** 사회책무 특별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표현의 자유 관련 현안의 시의성을 검토한 뒤, 학회 차원의 학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회장(집행위원회)에게 토론회 개최의 필요성을 공식 개진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27일 「허위정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쟁점과 파급 효과」를 주제로 위원회 출범 이후 첫 토론회를 개최하여, 위원회 활동을 실제 사회적 쟁점과 연결하고 공론의 장을 형성했다. 이는 사회적 책무를 학술활동을 통해 이행한 구체적 사례로, 이러한 활동 방식은 운영규정 제3조 제1호에 명문화되었다.

- **정기학술대회 기획세션 개최:** 한국언론학회 2026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학회의 사회적 책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회 책무 활동 범위와 방향, 그리고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회 사회적 책무 활동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도출했다.
- **학회 간 교류를 통한 사회적 책무 활동 공론화:** 2026년 6월 1일 개최된 한국방송학회 공적 참여 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언론학회 대표로 참여하여, 학회 제도 설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의하고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IV. 향후 논의를 위한 핵심 쟁점과 과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추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회의 사회적 책무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 쟁점들이 도출되었다. 이는 단순한 운영상의 문제를 넘어, 학회의 사회참여를 어떠한 기준, 절차, 그리고 권한 구조 속에서 수행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제도 설계의 문제이며, 향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

1. 핵심 쟁점

- **학회 ‘사회 책무’의 정의와 범위:** 학회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폭넓은 동의가 존재하지만, 사회적 책무란 무엇이며 어떤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개입을 유보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현행 운영규정은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보다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유연한 방식을 택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위원회 권한과 거버넌스 구조:** 제 52 대 한국언론학회 사회책무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지위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업무의 성격상 장기적으로는 학회의 상설기구로 제도화될 필요성을 가진다. 해외 학회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나, 한국언론학회에 적절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회장단, 집행위원회, 윤리위원회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 **공적 개입 방식과 절차:** 성명 발표 외에 학술 단체로서의 다양한 사회적 실천 방식을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공적 성명(public statement) 채택 절차, 의견 표명의 주체, 회원 의견 수렴 방식 등 절차적 쟁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 아울러 긴급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성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는 대표성 요구 사이의 긴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 **추천 절차의 제도화:** 공영방송 이사 추천 등 학회의 공적 추천 행위를 제도화하고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교화해야 한다. 피추천인의 자격 요건에 대한 관련 법령의 결격 사유뿐만 아니라 학문공동체의 규범에 부합하는 기준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공영방송 이사 추천 업무:** 학회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정당하며 필요한가에 대한 학회원 내부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추천 이후의 책임과 관련해서, 학회가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가 추천 취지에 맞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여 추천 결과에 대한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에도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학회 추천 이사가 임기 중 꺾어지는 경우, 후임에 대한 추천을 어느 주체가 어떤 절차로 진행할 것인가가 현행 법규정이나 3 학회의 합의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책임 특별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제도적, 절차적 공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학회 간 공동 논의를 통해 해소해야 할 과제로 판단한다.

2. 향후 과제

상기한 쟁점에 관련된 구체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차기 집행부에 제안한다.

- **규정 취지의 명문화:** 규정이 공적 참여를 제약하는 장치가 아니라 더 정당하고 책임 있게 사회적 책무 활동을 수행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임을 규정 안에 분명히 드러내는 방안 검토
- **위원회 업무 부담의 경감:** 다층적 수준의 의견 표명과 공적 추천 업무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행하는 구조 속에서 가중되는 위원회 업무 부담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에 대한 보완책 마련

- **발의 및 의결 요건의 세척화:** 의견 표명의 발의 요건과 의결 정족수를 운영세칙으로 구체화하되, 긴급 현안에 대한 완충 장치 마련
- **공영방송 이사 등 공적 추천 절차의 예외 상황 대비:** 적격자 부재, 정원 미달, 추천 이후 결격사유 발견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3 학회 추천으로 선임된 이사 임기 중 궐위가 발생할 경우 재추천 주체와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
- **기록과 평가 체계의 구축:** 채택된 성명뿐 아니라 보류, 기각된 안건, 논의 과정, 사후 효과까지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연례 보고로 축적하는 방안 마련

V. 맺음말

제52대 한국언론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 활동은 학회의 사회참여를 사건 대응형 발화에서 제도적 실천으로 전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었다. 위원회는 운영규정과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학회의 사회참여와 추천권 행사를 실행할 체계를 마련했고, 이를 공영방송 이사 후보 추천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이나 추천 이후의 책무와 같이 보완이 필요한 지점도 드러났다.

한국언론학회의 사회적 책무는 정관과 윤리강령,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사회참여 경험 속에서 존재해 온 주요 활동 영역이다. 학회의 사회참여에 대한 신뢰는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과 개입을 정당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에 달려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지위와 업무 체계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는 조직 개편의 문제를 넘어 언론학과 언론학회의 공적 책무와 사회적 위상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며, 우리 학계 전반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VI. 부록

부록 1. 한국언론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2026.05.0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학회(이하 '학회')의 정관 및 윤리강령에서 정한 사회적 책임 이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설치한 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2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며, 총무이사가 맡는다.
- ⑤ 위원회는 학회의 사회 책임 이행과 관련한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하거나 언론 및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회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 ⑧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 학회장은 1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직무)

위원회는 학회의 사회 책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회 책임과 관련한 학회의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회장, 학회 정관에 규정한 위원회, 연구회 또는 학회원 등이 의뢰한 사항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기구로부터 위원 추천 등 공식 의뢰를 받은 사항
4. 위의 각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학회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조(회의)

- ① 회의는 월 1회 열리는 정기 회의와 필요한 때 열리는 수시 회의로 구성하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기 회의의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회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 등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각 위원의 검토,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 ⑥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 ⑦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게시, 뉴스레터 게재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개하며, 신속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 회원의 이메일이나 SNS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기피·제척·회피)

- ①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기피 신청된 위원은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기피·회피 또는 자격이 정지된 위원은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6조(학회의 추천권 행사)

- ① 제3조 제3호에 따른 학회의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학회는 회원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자격 등을 정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한다.

② 언론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 간 협의가 필요한 추천권 행사의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중 신청한 회원 또는 위원회가 추천하는 회원 중에서 전문성, 학회 활동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관련 학회 간 협의에 참여할 1배수에 해당하는 회원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회 간 협의에 참여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신청일 기준으로 학회 정회원이 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2. 추천권 행사와 관련한 분야에서 학술적 성과나 실무 경력 등 전문성을 제시하는 경우
3. 방송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동일한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른 학회의 처리 절차에 신청 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④ 법령에 따른 추천권 행사를 학회가 독립하여 직접 행사하는 경우, 또는 학회가 일정한 수의 피추천 대상자를 정하여 제2항의 관련 학회 간 협의체에 보고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이때 피추천을 신청하는 회원은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재적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학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 회원이 학회의 정관이나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의견으로 추천의 철회 및 추천 철회 결정의 학회 홈페이지 게시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언론·사회적 의제에 대한 의견표명 등)

① 위원회는 언론이나 사회적 의제에 대해 제3조 제2호에 따라 학회의 참여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학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복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제00대 한국언론학회장 000'와 같이 학회장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2. '제00대 한국언론학회 집행위원회' 등과 같이 학회 내 기구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3. '한국언론학회'와 같이 학회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 4. 학술 활동 전개
- 5. 중장기적 대응 과제 지정
- 6. 기각
- 7. 판단 보류

③ 위원회가 요청한 제2항 제3호를 집행하기 위해서 학회장은 회원의 승인 및 의견 표명 형식 등에 대해 적절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학회원이 개별적으로 의견 표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

제8조(보고서의 작성·제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1. 위원회 활동 내용
- 2. 학회의 사회 책무 이행 및 대내외적 학술 활동에 대한 평가
- 3. 학회의 사회 책무 이행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평가와 제안

제9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6.5.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 (총회의 승인) 제2조 제7항의 총회의 승인에 관하여는 집행부의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부록 2. 한국언론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제정 2026. 06. 04.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언론학회 사회책임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 제9조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자료의 검토와 평가 등)

① 위원회 규정 제6조 4항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각 부문에 응모한 회원의 수가 추천 대상 인원의 2배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학회장,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자문위원회나 전문가에게 일정한 수의 심사 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추천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된 회원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며, 이후 5년간 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추천 대상자로 결정되어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회원이 학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는 추천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며, 즉시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학회 등에 그 취소를 요청한다.

⑤ 위원회는 각 부문에 응모한 회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방식의 심사를 진행한다.

⑥ 심사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공영방송 외의 기관에 학회원을 추천하는 심사의 경우 해당 기관(관련 제도 포함)을 이 항의 공영방송에 준하여 심사한다.

1.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비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에 대한 이해, 공영방송 발전에 관한 명확한 비전 등

2. 전문성: 공영방송·미디어 산업·미디어 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문적·실무적 역량과 경험 등

3. 독립성 및 공정성: 특정 정치단체·이해집단·추천 의뢰 기관 등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 역량 등

4. 도덕성: 학문적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이력 여부 등

5. 학회 활동 기여도: 한국언론학회 발전에 대한 기여, 학회 대표 후보로서의 역량 등

⑦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되어야 한다. 단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다는 이유, 또는 학술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다는 이유, 동일한 학회의 집행부로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다는 이유는 제외한다.

1.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2. 심사 대상자와 동일 기관에서 현재 직접적인 상하관계 또는 공동업무 관계에 있는 경우

3. 심사 대상자의 지원 또는 추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4. 심사 대상자와 금전적·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명백한 경우

⑧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 간 토의를 진행할 수 있고, 각 부문 응모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확인, 자료의 추가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제3항이나 제4항의 사유, 또는 추천받은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위법·비리 등으로 해임된 경우 등이 아니면 위원회의 각 부문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⑩ 심사 결과 추천 대상으로 선정된 회원의 명단은 공개하되, 심사 대상자별로 획득한 점수나 탈락의 사유, 또는 심사 위원의 개별적인 심사 결과 등은 법령상의 공개 의무 또는 법원 명령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비밀을 보장한다.

⑪ 심사와 관련한 자료는 법령의 규정 및 학회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조 (추천 대상자 결정 및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심사 결과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심사 대상자 중 상위자의 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때 점수 계산은 각 심사 대상자에 대한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가하여 평균을 구하고, 소수점 두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이하 같다).

② 심사 대상자가 전항에 따라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심사 위원 2인 이상의 평가 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인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한 모든 위원의 점수를 반영한다.

③ 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한 추천 대상자가 절차 진행 중에 결격 사유 등으로 탈락하거나,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로 재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다음 순위자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심사 결과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학회 정회원 활동 기간이 긴 순으로 추천한다.

제4조 (보칙)

① 이 운영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정관 및 위원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② 이 운영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한다.

부칙 (2026. 6. 4.)

제1조

이 세칙의 효력은 사회책임 특별위원회의 의결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